# 소프트웨어 손해배상공제

## 상품특징

소프트웨어사업(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)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안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상품

| 잠재위험 | 사고원인 | 사고유형 |
|---|---|---|
| 보안위험 | - 부정접속<br>- 정보사용권한부여오류<br>- Hacking<br>- Virus침투 | - 사용자 인식불능<br>- 제3자에 의한 고객개인정보 유용<br>- 서비스제공자의 금전적 손실<br>- 기업의 비밀 유출<br>- 데이터 도난 및 훼손 |
| 오작동위험 | - 정전<br>- 보안실패에 따른 기능마비<br>-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설계상의 오류<br>- 시스템과부하<br>- 운영자오류<br>- 화재 도는 수재 | - 운영장애 또는 중단<br>- 사용자인식불능<br>- 서비스제공자의 금전적 손실<br>- 서비스 운영장애 또는 중단에 따른 배상청구 책임<br>- 데이터 훼손 |
| 컨텐츠위험 | - 명예훼손<br>- 저작권 위반<br>- 상표권 위반 | - 특정인 명예훼손<br>- 타인의 개인정보 유용<br>- 지적재산권 침해<br>-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피소 |

## 가입대상

정보시스템 개발구축, 정보시스템 유지관리,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,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개별계약과 연간포괄계약으로 구분해서 가입이 가능

| 구분 | 개별계약 | 연간포괄계약 |
|---|---|---|
| 가입형태 | 특정 계약 단위로 가입<br>(공제기간=각 사업의 계약기간) | 전 사업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가입<br>(공제기간 1년) |
| 구비서류 | 계약서 사본 | 손익계산서 |

## 가입금액

- 개별계약 : 계약금액을 한도로 공제가입이 가능
  - 보상한도에 따른 예상 공제료(1년 및 일시납 기준)

| 1억원 | 2억원 | 3억원 | 4억원 | 5억원 |
|---|---|---|---|---|
| 1,086,800원 | 2,173,600원 | 3,260,400원 | 4,347,200원 | 5,434,000원 |

- 포괄계약 :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가입이 가능

소프트웨어공제조합

## 보장내용

| 구분 | 약관명 | 약관 설명 |
|---|---|---|
| 필수 | 소프트웨어손해배상공제 | 소프트웨어사업(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)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|
| 선택 | 교차배상 |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|

## 주요 보상하는 손해

피공제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소급담보 일자 이후에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공제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기간중에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

-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,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, 프로그래밍, 데이터 처리, 컨설팅, 보수, 공급, 설치, 관리 및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교육을 포함한 서비스
- 인터넷에서의 온라인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의 제공
- 인터넷 사이트의 설계, 구축, 운영, 관리 및 광고
- 전자메일 또는 호스팅 서비스
- 채팅방과 게시판의 유지 및 관리
- 인터넷용 암호화 소프트웨어, 또는 전자인증서의 설치, 관리 또는 유지
- 피공제자와 제3자간의 거래행위,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
-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로의 접속수단 제공

##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
-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
-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.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공제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.
- 전력공급중단, 정전, 전압·전류 불안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지원 또는 구성하는 통신선, 데이터 전송선 또는 여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배상청구.
- 직·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,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코드(바이러스)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조사하여 구하지 않음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

※ 상기 보장내용, 주요 보상하는 손해 및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은 약관의 일부를 발췌 또는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신청방법

- 견적신청: 홈페이지 -> 손해공제 안내 -> 소프트웨어

## 가입문의

소프트웨어공제조합(www.ksfc.or.kr) 02-2141-7852~4, Fax 02-2141-7801